



제311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[김동훈 의원 대표발의]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5. 04. 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김동훈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&#8228;시행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(안 제5조)
- 마.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문화관광과
- 라. 입법예고 : 2025. 4. 4. ~ 2025. 4. 10. (6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.

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‘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야간 관광은 연간 약 1조 3천여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,3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, 약 15,800 여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<sup>1)</sup>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, 인프라 구축 및 축제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차별화된 야간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,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--

1) 야간관광 경제적 파급효과 [출처: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, 한국관광공사(2022)]

- 생산유발효과: 약 1조 3,592억 원
- 부가가치유발효과: 약 5,309억 원
- 취업유발효과: 약 15,835명
- 고용유발효과: 약 9,093명

□ 야간관광 경제적 파급 효과 등



[출처 : 「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, 한국관광공사(2022)」

**☑ 「지방자치법」**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~3. (생략)

**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**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**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**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☑ 「관광진흥법」

**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, 2024. 10. 22.>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

[시행일: 2025. 4. 23.]

**제76조(재정지원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관

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명

-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5조(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)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
  2.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
  3.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
  4.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
  5.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
  6.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
  7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정을 통해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전이므로 예상되는 비용 및 경비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박선영